

# 2012. 5. 31부터 건축사 자격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

## 1. 건축사 자격제도 변경

### 배경

#### 국제 환경의 변화

- ▶ WTO 및 FTA의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에 직면
- ▶ 국제기준(UIA권고기준)에 맞는 자격제도 요구

#### 국내 환경의 변화

- ▶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정비
- ▶ 수준 높은 건축설계의 요구
- ▶ 다양한 사회적 변화 수용에 대한 요구

### 건축사 제도의 변경내용

#### 기존 제도

- ▶ 교육이수 → 예비시험 → 경력관리 → 자격시험 → 자격취득 → 건축사업무
- ※ 학력 실무경력 요건이 건축에 관한 전문성 부족해도 단기간 기계적 학습을 통해 자격획득

#### 변경 제도

- ▶ 교육이수 → 실무수련 → 자격시험 → 자격취득 → 자격등록 → 실무교육 → 갱신등록
- (UIA권고안을 기준으로 국내여건을 감안 개정)
- ▶ 외국과 같은 자격체계와 유지관리 위한 건축사등록원 설립운영(미국 : NCARB, 영국 : ARB, 독일 : BAK, 프랑스 : CNOA)

## 2. 실무수련 제도 신설

### 주요내용

- ▶ 3년 이상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실무수련 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

### 제도취지

- ▶ 건축실무에 관한 기본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으로 전문성

### 을 확립

- ▶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비한 국제기준 충족
- 관련근거**
- ▶ 건축사법 제13조
  - ※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아야 함.
- ▶ 건축사법시행령(안) 제15조
  - ※ 3년 이상의 기간에 465일 이상 실무수련을 이수하여야 함.

### 감독건축사

- ▶ 건축사자격등록을 마친 건축사
- ▶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감독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의무 지님

### 실무수련 대상자

- ▶ 건축학인증 학위과정 5년제 졸업자 및 8학기 이상 이수자
- ▶ 건축대학원 : 학사과정 (건축전공) 2학기 이상 이수자
  - 학사과정 (건축 비전공) 4학기 이상 이수자
- ※ 건축학 비 인증 과정 졸업자 (2023년까지 유예) : 실무수련 4년
- ※ 법 시행일 전 5년제 졸업자 : 실무경력을 실무수련으로 80% 환산 인정
- ※ 현행 건축사예비시험 : 2019년 12월 31일 까지 시행
- ※ 현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: 2026년 12월31일까지 특별전형에 응시가능

## 3. 건축사자격 등록제도 신설

### 주요내용

- ▶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사자격을 등록 해야 함
- ▶ 기존 - 건축사업무수행 : 건축사업무신고 (지자체)
- ▶ 변경
  - 건축사업무수행 : 건축사자격을 등록(대한건축사협회)
  - 건축사업수행 : 건축사 자격등록 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(지자체)
- ※ 건축사사무소개설자 :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
- ※ 소속건축사 : 건축사 업무수행이 가능하나 협회에 건축사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

### 제도취지

- ▶ 실무수련, 자격등록, 갱신등록으로 연계되는 건축사자격의 체계적 관리
- ▶ 국제기준의 자격제도에 맞추어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

### 관련근거

- ▶ 건축사법 제18조 제1항, 건축사법 제38조의3 제2항 제4호  
※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(대한건축사협회)에게 등록하여야 함

### 등록 대상자

- ▶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모든 건축사
- ▶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건축사도 2013. 5. 30 까지 등록하여야 함

### 건축사 윤리선언

- ▶ 등록 신청 시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함.
- ▶ 윤리선언을 위반 할 시 징계대상이 됨  
※ (법 제30조의3 제1항 제2호)

## 4.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제도 신설

### 주요내용

- ▶ 건축사자격 등록 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(5년) 건축사 자격을 갱신등록

### 제도취지

- ▶ 건축사의 최신기술 습득 및 자기계발 동기 부여
- ▶ 실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

### 관련근거

- ▶ 건축사법 제18조 제5항, 시행령(안) 제26조 제2항  
※ 건축사 자격등록 후 5년마다 건축사자격을 갱신등록 하여야 함.

###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절차

- 신고서 작성 협회 홈페이지 접속 신고서다운 또는 인터넷으로 직접작성
- 구비서류 접수 건축사윤리선언서 등, 시·도건축사회 또는 우편 접수
- 접수확인 신고서류 및 구비서류 확인(본회)
- 등록증 발급 건축사 자격 등록증, 건축사 개인 - 인터넷 출력

## 5.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 신설

### 주요내용

- ▶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사항으로 5년 내 60시간 이수

### 제도취지

- ▶ 건축사자격 취득 이후의 지속적인 직능교육 유도
  - ▶ 건축전문직으로서의 최신기술 습득 및 자기계발의 여건 조성
- 관련근거** (건축사법시행령(안) 제30조 제1항)
- ▶ 등록된 건축사는 5년에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
- 실무교육 실시기관**
- ▶ 대한건축사협회

### 실무교육 종류

- ▶ 윤리교육 ▶ 전문교육 ▶ 자기계발

### 실무교육 방법

- ▶ 집체교육 ▶ 온라인교육 ▶ 활동 참여

## 6. 건축사 등록업무 추진일정

2011년 5월 30일 건축사법 개정공포

2011년 6월 국토해양부로 부터 건축사 등록업무 협회 위탁 문서 수령

2011년 7월 건축사등록업무 준비위원회 구성 및 업무수행

2012년 1월 건축사 등록업무관련 전산프로그램개발 착수

2012년 4월 건축사 등록업무관련 전산프로그램개발 완료

2012년 5월 31일 건축사 등록업무 개시

## Q & A

**Q** 기존 건축사도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?

**A** 기존 건축사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함

**Q** 교육은 언제부터 어디서 하여야 하는가?

**A** 교육은 2012년 5월 31일부터 협회에서 실시(현재 실시 방안 수립 중)

**Q** 건축사 윤리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가?

**A** 인류, 국가, 사회, 건축주, 동료건축사, 자기자신,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등,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축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로 구성

**Q** 기존 위탁업무인 건설기술자, 건축사 실적관리업무는 어떻게 되는가?

**A**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이고, 실적관리는 건축사법이나, 관련규정이 등록업무와는 성격이 다름.  
현재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 위탁업무 모두 전산상 연계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음

**Q** 등록업무를 협회에서 수행하는데 회원의 혜택은?

**A** 법률에 근거한 등록업무는 회원과 비회원 차별을 금지함.  
회원은 실무교육 부분에서 협회 활동, 교육수강 등에서 비회원과 다른 혜택부여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